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(약칭: 근로자의날법)



[시행 2016. 1. 27.] [법률 제13901호, 2016. 1. 27., 전부개정]

고용노동부 (노사협력정책과) 044-202-7591

부칙 <제13901호,2016. 1. 27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